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40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이정현 · 오세희 · 박선원
허성무 · 김우영 · 한민수
송기현 · 한준호 · 손명수
노종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물류창고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제출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물류창고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10까지를 각각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11까지로 하고,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의6(중전의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의4제1항”을 “제21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의4”를 “제21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의4”를 “제21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4제4항”을 “제21조의5제4항”으로 하며, 제21조의7(중전의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의4제2항”을 “제21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의4제8항”을 “제21조의5제8항”으로 하며, 제21조의9(중전의 제21조의8)제1항 중 “제21조의7”을 “제21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7”을 “제21조의8”로 하며, 제21조의10(중전의 제21조의9)제1항 중 “제21조의10”을 “제21조의11”로 한다.

제21조의4(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에서의 화재 예방에 관한 계획(이하 “화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해당 계획을 지체 없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창고업자는 신고한 화재안전관리계획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내용·신고·보완요구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1호 중 “제21조의10”을 “제21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제21조의5”를 “제21조의6”으로, “제21조의6”을 “제21조의7”로 한다.

제63조제4호 중 “제21조의4”를 “제21조의5”로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제4호 및 제5호 중 “제21조의10”을 각각 “제21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

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제4호 및 제5호 중 “제21조의10”을 각각 “제21조의11”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1조의9제1항”을 “제21조의10제1항”으로 한다.

1의3. 제21조의4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의2. 제21조의4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제65조제2항 중 “제21조의4제5항”을 “제21조의5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거부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1조의5제2항”을 “제21조의6제2항”으로 한다.

1.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4(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에서의 화재 예방에 관한 계획(이하 “화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해당 계획을 지체 없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u>

3. <u>제21조의4</u>제6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u>제21조의4</u>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생략) ②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u>제21조의4</u>제4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u>제21조의6</u>(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21조의4</u>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21조의4</u>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3. <u>제21조의5</u>----- ----- ----- 4. <u>제21조의5</u>----- ----- -- 5. (현행과 같음) ② ----- ----- -----<u>제21조의5</u>제4항----- ----- -----. <u>제21조의7</u>(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u>제21조의5</u>제2항-----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1조의5</u>제8항----- -----
--	---

경우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u>제21조의7</u> (재정지원 등) (생 략)	<u>제21조의8</u> (재정지원 등) (현행 제21조의7과 같음)
<u>제21조의8</u> (보조금 등의 사용 등)	<u>제21조의9</u> (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u>제21조의7</u> 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u>제21조의8</u> ----- ----- ----- -----.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제21조의7</u> 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 ----- -- <u>제21조의8</u>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제21조의9</u> (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창고업자가 <u>제21조의10</u> 에 따라 준용하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제4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	<u>제21조의10</u> (과징금) ① ----- ----- ----- <u>제21조의11</u> ----- ----- ----- ----- -----

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21조의10</u> (준용규정) (생략)	<u>제21조의11</u> (준용규정) (현행 제21조의10과 같음)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청문) ----- ----- ----- -----.
1. 제17조제1항(<u>제21조의10</u>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 ----- <u>제21조의11</u> ----- ----- ----- -----
1의2. <u>제21조의5</u>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또는 <u>제21조의6</u> 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u>제21조의6</u> ----- ----- <u>제21조의7</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3조(수수료)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 신
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
의 접수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 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 16.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생략)

<신 설>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
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5. 제21조의11

6.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1조의4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제21조의10

및 징수	-----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3. 제21조의11----- ----- ----- ----- -----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4. 제21조의11----- ----- -----제21조의11----- ----- --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5. 제21조의11----- ----- -----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	⑥ ----- ----- -----제21조의10제1항----- ----- ----- ----- -----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제65조(벌칙) ① (생략)

②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
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
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신설>

제67조(과태료) ① 제61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
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거부한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

제6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의5제5항-----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보완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u>제21조의5제2항</u>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③ (생 략)	<u>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u> 2. <u>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거부한 자</u>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1조의6제2항</u>----- ----- ③ (현행과 같음)
---	--